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3. 15)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임명호)

□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의 명예감독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와 중복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상의 명예 감독관 제도가 어느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되는 것인지?	○ 부천시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566호
의결 년월일	2010. 3. 19 (제159회)

제출년월일 : 2010. 2.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의 명예감독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와 중복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 첨 부: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01. 15 조례 제200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 방지와 행정사각을 보완하여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시·구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시는 1억원이상, 구는 3천만원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라 함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①시장(구의 경우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

②명예감독관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지역의 신망이 있는 인사(시의원, 공사관계 전문가, 사회봉사단체원 등) 중 시장(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자 등 공정한 감시·감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협조 등) ①시장(구청장)은 각종공사의 착공 전에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을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명예감독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시의 관계기관 및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 ①명예감독관은 공사감독을 지정받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명예감독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공사감시기록부를 작성하여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명예감독관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명예감독관은 공사시행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공자 및 발주처(시장 또는 구청장)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시장(구청장) 및 시공자는 명예감독관이 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적극 수렴하고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 및 반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업무) 시장(구청장)은 당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20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기 발주하여 시공 중인 각종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